

도서관법개정법률안 제안설명서

제안자: 金賢子議員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조가 다변·다원화 함께 따라 현재는 물론 향후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식·정보는 폭증하고 단기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주요 지식·정보원으로서의 도서관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래의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나 정보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주는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은 이러한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정보원의 개발과 연구기능,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사회교육기능 및 공공문화발전기능 등 적극적이고 다원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이러한 발전적인 의미의 정보자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아직은 발전초기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도의 산업기술문명과 지식·정보화 사회로 집약되는 미래사회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상황변화에 부응하고 다원적 역할수행 등에 있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은 이제 체계 및 운영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새로이 정립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양태로 명실공히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도서관이 안고있는 당면과제인 도서관의 기능 및 운영 활성화,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재원확보,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전문화, 전산망을 통한 전국 도서관정보협력체계 구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서관법의 개정 및 도서관행정지원체제의 확립이라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된 후 24년이 경과된 오늘 날까지 한변의 보완·개정작업이 없이 미정비상태로서 급변하는 현대 정부·산업사회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 낙후된 실정인 바, 본 의원은 도서관법 개정에 대한 도서관계의 절실하고 시급한 요청을 수렴하여 지난 1년에 걸쳐 관련기관 및 사계의 전문가와의 협의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렇게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법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하고 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각기 그 특성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서관발전위원회와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육성을 의무화하고 공립 공립도서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문화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납본제도의 확충과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서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서직을 1급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로 구분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정보·자료의 이용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연계체제로서 도서관정보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님들께서는 급변하는 정보·산업사회에 대처하고 도서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서관법 개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이해하시어 본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